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8월 17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2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8조 다음에 “제5장 보직관리”를 삽입한다.

제5장에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보직관리 원칙) 소속공무원을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직위의 지정 운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소속기관의 직위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가 없을 경우 전문관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2와 같다.

④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수당을 별표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직위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전문직위 지정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요건 (제20조제3항 관련)

소속	직위명	보직가능 직 급	주요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우대요건
군산 예술의 전당	무대조명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조명기기 운영 및 설치 ◦무대조명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조명 디자인 등	무대조명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 1급이상	-
	무대음향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음향기기 운영 및 설치 ◦무대음향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음향 디자인 등	무대음향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1급이상	-
	무대기계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작동 및 무대장치 설치 ◦무대기계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장치 정기안전점검 등	무대기계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1급이상	-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전문직위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제4항 관련)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전문직위 수 당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군산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 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1년 미만	5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9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125,000원
		4년 이상	200,000원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명부 작성방법) ① (생략)</p> <p>③ 평정점 기준은 <u>별표와 같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6조(명부 작성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③ -----<u>별표 1과</u>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보직관리</u></p> <p>제19조(보직관리 원칙) <u>소속공무원을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u></p> <p>제20조(전문직위의 지정 운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소속기관의 직위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전문직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가 없을 경우 전문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p> <p>③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요건은 <u>별표2와 같다.</u></p> <p>④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u>전문직위수당을 별표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u></p> <p>⑤ 그 밖에 전문직위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현 행>

[별표]

전입순위평정 및 가점기준(제16조제3항관련)

<개정안>

[별표 1]

전입순위평정 및 가점기준(제16조제3항관련)

<신 설>

[별표 2]

전문직위 지정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요건 (제20조제3항 관련)

소속	직위명	보직가능 직 급	주요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필수요건	우대요건
군 산 예술의 전 당	무대조명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조명기기 운영 및 설치 ◦무대조명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조명 디자인 등	무대조명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 1급이상	-
	무대음향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음향기기 운영 및 설치 ◦무대음향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음향 디자인 등	무대음향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1급이상	-
	무대기계 주 무 관	지방공업· 지방기계운영· 지방전기운영 주사 또는 주사보	◦군산예술의전당 대소공연장 무대기계 작동 및 무대장치 설치 ◦무대기계 기기 점검 및 수리 ◦공연장 무대장치 정기안전점검 등	무대기계 운영 1년이상 근무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1급이상	-

<신 설>

[별표 3]

전문직위수당 지급 구분표 (제20조제4항 관련)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전문직위 수 당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군산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 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1년 미만	5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9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125,000원		
		4년 이상	200,000원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248호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1.19일 조직개편으로 어린이행복과가 신설되고 아동복지계가가족청소년과에서 어린이행복과로 편입 됨에따라, 제4조제1항제11호의 가족청소년과장을 어린이행복과장으로, 제8조제1항의 가족청소년과를 어린이행복과로 개정하고, 설치 계획이 없는 노인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소관부서명 변경(안 제4조 및 제8조)

가족청소년과장을 어린이행복과장으로, 가족청소년과를 어린이행복과로 함

※ 붙임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3231, FAX 063-454-4159, 전자우편 cbs07127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전화 063-454-3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아동들에게”를 “아동들에게”로 하고,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10호, 제11호 중 “노인·아동”을 다음과 같이 “아동”으로 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0. “아동”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제1항11호 중 “가족청소년과장”을 “어린이행복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족청소년과”를 “어린이행복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군산시 <u>노인·아동</u>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u>노인·아동</u>들에게 적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 <u>노인·아동</u>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군산시 <u>노인·아동</u>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지원 대상 <u>노인·아동</u>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 9. (생략) 10. <u>노인·아동</u>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u>노인·아동</u>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p style="text-align: center;">---- <u><삭제></u> ----- -----</p> <p>제1조(목적) ----- ----- ----- <u><삭제></u> ----- ----- ----- <u><삭제></u> ----- ----- ----- ----- ----- ----- -----</p> <p>제2조(설치) ----- ----- <u><삭제></u> ----- ----- -----</p> <p>제3조(기능) ----- ----- ----- 1. ----- <u><삭제></u> ----- ----- 2. ~ 9. (현행과 같음) 10. <u><삭제></u> ----- ----- 11. 기타 <u><삭제></u>-----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생략) 1. ~ 10. (생략) 11. 당연직공무원(주민복지국장, <u>가족청소년과장</u>, 환경위생과장) 12. (생략) ②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 <u>어린이행복과장</u>,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군산시</u> <u>가족청소년과</u> 아동복지담당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8조(간사) ① ----- ----- <u>어린이행복과</u> ----- 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5 - 1249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 복지시설 등의 입소, 퇴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교육지원청, 아동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변호사, 의사, 교사 중에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의견제출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3231, FAX 063-454-4159,
전자우편 cbs07127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전화 063-454-3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산교육지원청 또는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 - 1250호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감보조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할 민간단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 마련

- 군산시의 행사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 행사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우선선정
-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마련

- 보조금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장(참조 : 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전화 063-454-3231, FAX 063-454-4159,
전자우편 cbs07127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전화 063-454-3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날 기념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주관단체"라 함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은 군산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4조(주관단체의 선정)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어린이날 기념사업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군산시에서 주최한 어린이날 기념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3.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본 조례의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 본 조례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 보조금 정산시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모두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고시 제2015-1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5-171호(2015.08.07)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승인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중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공공청사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	증)8,079	8,079	금회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1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45번지 - 면적 : 8,07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 미활용중인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경찰 및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민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3.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5-109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17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6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268-2, 268-8, 268-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마동2길 79-1	20150803	20070528	도암리 마동 마을 소재
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99-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장전길 12	20150803	20070528	옥서면 장전마을 소재
3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산20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서기길 3-28	20150804	20070528	대정리 서기 마을
4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 8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2	20150803	20090508	섬이름 사용
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091-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53-8	20150812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영
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4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191 (미장동)	20150803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57-1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5-10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57-4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5-4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093-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임피중길 61	20150803	20100125	서수리 임피중학교 소재
1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6-3	전라북도 군산시 철성3길 45-1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53-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4길 2 (수송동)	20150803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1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8-7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길 7-4 (수송동)	20150811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13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78-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길 7-6(수송동)	20150811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1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5-1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남로 2 (수송동)	20150812	20100125	수송택지의 남쪽도로 로 수송동에서 인용
1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04-4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3길 18 (수송동)	2015081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6-11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3길 3 (미장동, 흥남파출소)	20150810	20150127	도로 신설
1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680-2, 678-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풍성길 15-5	20150817	20070528	풍성1구 마을 소재
1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54-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1441-7	20150817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 존도로명 활용
1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64-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866-1	20150817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
2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722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86 (소룡동)	20150817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 나는 도로
21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36-10	전라북도 군산시 철성7길 86 (산북동)	20150817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2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12-1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40-1 (경암동)	201508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54-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백석로 58-17	2015081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14-1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3길 40-1 (조촌동)	20150817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5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37-8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길 23-39 (오식도동)	20150817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 향성 도로명 부여
2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809-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라로 157-2	20150817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 는 도로로 서라선이 라함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35-1		20150811	20100125	군산시 중심의 도로

군산시 공고 제 2015 - 1259 호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 년 8 월 14 일

1. 개최목적

- 군산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9. 3.(목) 15:00
- 장소 : 군산시 수송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동수송1길 7)

3. 수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

- 관할 연안의 범위, 계획 수립 대상 연안
-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 통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4. 주민의견 제출 및 신청기한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이 있어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2015. 8. 28.(금) 18:00까지 서면으로 발표내용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및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 ※ 제출장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향만물류과

FAX : 063-454-2789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향만물류과(☎ 063-454-2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의견제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소속/직급	/	성 별	

[의 견 제 시]

Blank area for submitting comments.

군산시 공고 제2015-12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8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

나. 명 칭 : 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 증축공사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m ²)	실시계획인가		비 고
			기존(m ²)	금회(m ²)	
전기 공급설비	군산복합 화력발전소	144,962	건축면적 24,358.82	건축면적 25,101.18 (증 742.36)	증축 (1동/2층)
			연 면 적 39,057.91	연 면 적 39,855.32 (증 797.41)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 강남파이낸스센터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5. 2. 2. ~ 2015. 7. 31.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